

인천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2782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욱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11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의 2021. 1.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8. 6. 접수 제3269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지분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해당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김지영